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8. 10 선고 2021가합52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1. A

2. B

3. C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범준

4. D

5. E

변 론 종 결 2022. 5. 26.(피고 4, 5에 대하여) 2023. 5. 25.(피고 1 내지 3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 B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와 F 사이에 2017. 5. 2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F에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5. 24. 접수 제107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F 사이에 2017. 7. 20.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F에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8. 1. 접수 제156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E와 F 사이에 2017.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F에게 인천지방법원 2017. 5. 23. 접수 제1767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A, B은 F에게 인천지방법원 2021. 4. 13. 접수 제1490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제4항 및 ①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피고 C와 F 사이에 2017. 7. 20.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 C는 F에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8. 1. 접수 제156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A, B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이다. F는 인천 G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5급)으로 재직하면서 H와 함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 2) 피고 C는 F의 배우자였고, 피고 A, B은 F와 피고 C의 자녀이다. 피고 D, E은 F와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F와 H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 1) F와 H은 형식적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실제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한 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328호로 공소제기되었다.
- 2) 위 법원은 2019. 5. 12. F와 H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8회에 걸쳐 합계 5,373,513,1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F를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F가 서울고등법원 2019노631호로 항소하였다.
- 3) 서울고등법원은 2019. 9. 5.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F를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F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도1411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11. 28.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F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원고는 2017. 5. 29. 및 같은 해 6. 23. F에 대하여 요양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기존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826,236,850원 및

6,242,100,17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각 통보하였다.

라. F 명의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동

1) F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5. 24. 접수 제10734호로 같은 달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와 F는 2017. 7. 20.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F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8. 1. 접수 제15668호로 2017. 7. 20.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F는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 5. 23. 접수 제176752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E은 피고 A, 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 4. 13. 접수 제149094호로 2021.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A,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C 등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A, B, C의 주장

① F와 피고 C는 2017. 7. 20.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하였고, F 등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9. 11. 28.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2019. 11. 28.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 ② 또한 원고는 F와 피고 C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7. 5. 및 2017. 6. F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다음 해인 2018. 12.경에는 F의 소유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되었고 F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사건 소는 2019. 11. 28. 및 2018.

12.경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1. 6. 4.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 B, C(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 담당자가 F의 사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말한다. 원고의 부당이득금 환수채권의 징수, 추심 및 보전 업무는 분사무소인 각 지역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원고 본부의 급여사후징수부는 F가 포함된 납부의무자 명단 대상자들의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문서를 2020. 12. 10. 시행하였다. 피고 A, B이 2021.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의 환수담당자가 원고의 법률상대리인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였으므로, 원고가 구체적으로 F의 사해행위를 인식한 시점은 2021. 4. 13. 이후이다. 설령 위 시점이 아니라 원고 본부가 각 지역본부에 위 납부의무자의 명단을 보낸 2020. 12. 10.을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보더라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 내인 2021. 6.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 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F에 대한 유죄판결이 2019. 11. 28.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7. 5. 및 2017. 6. F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한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인 원고가 위 시점에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인 F의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본부의 급여사후징수부가 2020. 12. 10. 원고 각 지역본부의 의료기관지원부에 ‘빅데이터실에서 발췌한 자료를 근거로 2019년도에 보유재산이 변동된 불법개설 요양기관 납부의무자 명단을 송부하니 사해행위성 검토 후 사해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의 ‘보유재산이 변동된 불법개설 요양기관 납부의무자 명단 송부’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낸 사실, ② 그 문서에는 재산변동된 납부의무자 개인 명단(830명), 재산변동된 납부의무자 법인 명단(203개) 및 업무방법서가 첨부된 사실, ③ 이와 같이 첨부된 ‘재산변동된 납부의무자 개인 명단’ 순번 175번에 F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원고가 주된 사무소 외에 지역본부 등을 두고 있고, 주된 사무소나 지역본부에 납부의무자의 재산변동을 파악하는 부서 내지 직원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부서 내지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는 2020. 12. 10. 이후에야 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의 사해행위성 검토를 통해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 내인 2021. 6. 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 C 등에 대한 소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 피고 C 등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F와 피고 D가 2017. 5. 23.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F에 대하여 7,210,203,330원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있었고, F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있었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3,936,729,265원이었으므로 F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D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F와 피고 D 사이에 2017. 5. 23. 체결된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4.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F와 피고 E가 2017. 5. 23.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F에 대하여 7,210,203,330원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있었고, F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있었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3,936,729,265원이었으므로 F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E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F와 피고 E 사이에 2017.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5.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F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단위: 원]

통보일	결정번호	요양급여 지급기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상한액
2017. 6. 23.	J	2013. 5. - 2017. 4.	4,860,364,290		6,955,550
	K	2013. 5. - 2017. 4.		1,374,780,330	
2020. 10. 27.	L	2017. 5. - 2017. 5.	109,677,730		
	M	2017. 5. - 2017. 5.		32,188,580	
합계			6,383,966,480		

나) F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2782호로 원고의 2017. 6. 23. 자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2020. 6. 16.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한편 F는 원고의 2020. 10. 27. 자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제기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F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 징수채권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들고 있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F에 대하여 2017. 6. 23.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F는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F에 대한 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2020. 10. 27. 자 환수처분은 재산분할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① 대상 요양급여 지급 기간 등에 비추어 F와 피고 C 사이에 재산분할계약이 체결된 2017. 7. 20. 이미 원고의 환수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② 장래 환수결정에 따른 환수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2020. 10. 27. 환수결정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0. 10. 27. 자 환수처분에 따른 원고의 F에 대한 채권도 피고 C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원고는 2012. 4.부터 2013. 5.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인 826,236,850원의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¹⁾ 또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채권만으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②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 제1심(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2476)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고 관련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원고의 F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 즉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보험급여 금액 전부를 징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개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환수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원고의 F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 징수채권은 피고 C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재산분할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F는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C와 가장으로 이혼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하였다. F와 피고 C의 이혼은 가장이혼이므로 F와 피고 C의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F와 피고 C의 이혼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초과부분은 취소의 대상이 된다. F와 피고 C의 혼인생활 기간 동안 두 사람은 F의 급여소득 및

F 명의 부동산의 임차료 수입으로 생활하였고 피고 C는 별다른 소득활동이 없었으므로, 피고 C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가액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전체 가액의 20% 미만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장이혼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9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F와 피고 C가 가장으로 이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지 여부 및 초과 범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N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재산분할 당시인 2017. 7. 20. 기준으로 5,494,986,000원이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9. 30. 기준으로는 6,363,397,400원인 사실, ②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F가 피고 C와 혼인하기 전인 1974년 및 1985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③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4,854,960,000원(2017. 7. 20. 기준) 또는 5,774,460,000원(2022. 9. 30. 기준)이고, 위 각 부동산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8.35% 또는 90.7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원고에 대한

채무만으로도 적극재산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 7. 20. 피고 C에게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② 이 사건 제1부동산 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F가 피고 C와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인 점, ③ 혼인기간 중 피고 C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F가 얻은 소득과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으로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가 피고 C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와 부양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액 합계가 5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전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 전부를 피고 C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고,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재산 중 F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비중, F와 피고 C의 혼인생활 기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한 피고 C의 기여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혼사유, 이혼 후 피고 C가 자녀들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5 지분을 피고 C의 정당한 귀속 부분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

다. 소결론

피고 C와 F 사이에 2017. 7. 20.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상회복으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3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2017. 6. 23. 및 2020. 10. 27. F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5.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 따른 원고의 F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 징수채권은 피고 A, B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 A, B은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5.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E과 F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F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① 2017. 5. 23.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7. 5. 24.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② 피고 D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날인 2017. 5. 23.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 E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F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F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 E, 전득자인 피고 A, B은 자신들에게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A, B의 선의 여부

1) 피고 A, B의 주장

피고 A, B은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외조부로부터 각 5,000만 원씩 증여받은 돈으로 매매대금 중 피고 C의 임차보증금 25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00,000원을 피고 E에게 지급하고 취득세 및 증여세,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 A 등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고 E과 F의 같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3) 판단

갑 제8, 1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와 피고 E은 2017. 5. 23. 피고 E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5,2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작성한 사실, ② 피고 A, B은 2021. 3. 31. 외조부인 O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 ③ 피고 E과 피고 A, B은 같은 날 피고 E이 피고 A, 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피고 A, B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31. 매매를 원인으로 2021. 4. 13.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는 F의 전 배우자이고, 피고 A, B은 F와 피고 C 사이의 자녀인 점, ② 피고 E은 2017. 5. 23. F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2021. 3. 31. F의 자녀들인 피고 A, B에게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도 시점 전후로 전국의 부동산 시세가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매수한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으로 매도한 점, ③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 계좌(피고 E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에는 2021. 3. 31. 이후 피고 피고 A, B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송금한 기록이 없고(갑 제32호증),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21. 3. 30. ‘유통출금’으로 3,800만 원이 출금되면서 ‘E 전액’으로 기록한 거래내역만 있는 점(을 제6호증), ④ 위 거래기록에 따르면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21. 3. 31.인데 계약금은 그보다 하루 전인 같은 달 30. 송금하였고, 매매계약서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은 2021. 4. 5. 및 같은 달 12.로 되어 있지만 실제 중도금 및 잔금은 수수되지 않아,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금전거래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⑤ 매매대금 중 252,000,000원은 피고 C의 피고 E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⑥ 피고 C가 위 임대차보증금 252,000,000원 중 피고 A, B에게 각 1억 원씩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신고를 하는 등 거래과정에 계속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전득자인 피고 A, B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 E과 F 사이에 2017.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전득자인 피고 A, B은 채무자인 F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A, B과 피고 E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 A, B과 피고 E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31.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F와 수익자인 피고 E 사이에 2017. 5. 23. 체결된 매매계약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E과 피고 A 등 사이에 2021. 3. 31.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A 등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7.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A, B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A,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철, 판사 김 송, 판사 신철순

부동산의 표시

1. 상주시 P, Q

[도로명주소] 상주시 R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소매점 964.4㎡

휴게음식점 15.6㎡

철골조 및 파이프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판매 및 영업시설

1층 철골조 512.46㎡

2층 파이프조 175.74㎡

2. 상주시 P, Q에 있는 S호

[도로명주소] 상주시 R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판매 및 영업시설 304㎡

3. 상주시 T 답 23㎡

4. 상주시 P 답 2,096㎡

5. 상주시 Q 답 1,582㎡

6.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연수구 U에 있는 V아파트 W동

[도로명주소] 인천 연수구 X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15층 아파트

1층 553.255㎡, 2층 640.17㎡, 3층 640.17㎡, 4층 640.17㎡, 5층 640.17㎡, 6층

640.17㎡, 7층 640.17㎡, 8층 640.17㎡, 9층 640.17㎡, 10층 640.17㎡, 11층 640.17㎡, 12층 640.17㎡, 13층 640.17㎡, 14층 640.17㎡, 15층 640.17㎡, 지하층 641.70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인천 연수구 U 대 59,720.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4층 Y호 철근콘크리트조 95.7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59720.5분의 53.1511. 끝.

1)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면서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였을 경우, 원고가 그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57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원고는 규정 신설 전인 2013. 5. 21.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826,236,850원에 대해서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구하고 있다(원고의 2022. 5. 23. 자 준비서면 13쪽 이하).